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2월 28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5년 3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3월 12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안전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과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방위사태 사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명칭 변경(안 제2조)
-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구체화 및 추가(안 제3조)
- 통합방위협의회 및 종합상황실 운영 지원(안 제2조 및 제6조)
-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5. 2. 28.
- 회부일자 : 2025. 3. 10.
- 상정일자 : 2024. 3. 12.

2. 제안이유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과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방위사태 사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명칭 변경(안 제2조)
-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구체화 및 추가(안 제3조)
- 통합방위협의회 및 종합상황실 운영 지원(안 제2조 및 제6조)
-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통합방위법」 제5조에서 군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나. 입법의 취지

- 상위법에 따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명칭을 현행화하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과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방위 사태에 대한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하려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에서 위원 구성의 성별 구성을 규정하였고 제3항제7호 및 제4항제4호에서 협의회 위원 명칭을 구체화하였음. 또한 제8항에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안 제3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서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함.

< 협의회 심의사항 >

1. 통제구역 설정
2.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통합방위작전 · 훈련의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 운용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5.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항
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안 제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 운영)에서 통합방위종합상황실과 군 · 경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구성 및 위기발생시 유관기관과의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 등에서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통합방위종합상황실과 관계기관 통합방위 공유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사태에 대한 사전 대비태세 확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통합방위법

-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24. 1. 16.>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 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1
----------	-----

제출년월일 : 2025. 2. 28.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과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방위사태 사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명칭 변경(안 제2조)
- 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구체화 및 추가(안 제3조)
- 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종합상황실 운영 지원(안 제2조 및 제6조)
- 라.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8622(2024. 11. 25.)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8622(2024. 11. 25.)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반영 [가족복지과-18360(2024. 11. 29.)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1539(2025. 1. 21.)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2208(2025. 2. 6.)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를 “「통합방위법」 제5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2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제4호 중 “작전과장”을 “정보작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제10호”를 “제3항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평창지역 336방첩부대 136방첩대의 방첩관

⑧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통제구역 설정
2. 통합방위 대비 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통합방위작전 · 훈련의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 대책
 - 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홍보, 계몽 및 지원하기 위한 대책
 -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 운용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나. 통합방위작전 ·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 · 관 · 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5.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항
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의 제목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으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 운영) ① 「통합방위법」(이하“법”이라 한

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② 군·경 합동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 구분없이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전상황에 따라 “병종사태”시에는 평창경찰서 내에, “을종사태” 이상의 사태선포시에는 육군제8087부대 1대대에 둘 수 있다.

③ 각종 위기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드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영상감시장비(TOD)등에 대한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자로 한다.

1. ~ 6. (생 략)

7. 군사안보지원부대 평창지역 관계관

8. ~ 10. (생략)

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회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
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작전담당 간사 : 평창경찰서
작전업무 담당과장(병종사태),
제8087부대 1대대 작전과장
(을종사태 이상)

5. (생략)

④ (생 략)

⑤ 제2항제10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생 략)

<신 설>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평창지역 336방첩부대 136방 첩대의 방첩관

8. ~ 10. (현행과 같음)

(4) _____

1. ~ 3. (현행과 같음)

4. -----

----- 정보작전과
장-----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3항 제10호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통제구역 설정

3. 통합방위 대비책

4. 통합방위 작전 · 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 작전 ·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 계몽 및 지원대책

5.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 · 운영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작전 ·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 · 관 · 군 간의 유대강화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통제구역 설정

2.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 한다)에 관한 사항

3. 통합방위작전 · 훈련의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홍보, 계몽 및 지원하기 위한 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 운용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
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
항

나. 통합방위작전 · 훈련에 참
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
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
· 관 · 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5.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항
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
하는 안건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⑤ (생략)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
음)

<신설>

제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 운영) ① 「통합방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
2호에 따른 통합방위종합상황
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 ·
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② 군 · 경 합동상황실은 통합방
위사태 구분없이 통합방위종합
상황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전상황에 따라
“병종사태”시에는 평창경찰서
내에, “을종사태” 이상의 사태
선포시에는 육군제8087부대 1
대대에 둘 수 있다.

③ 각종 위기 발생 시 유관기관
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드론, 폐쇄회로 텔레비
전(CCTV), 열영상감시장비(T
OD)등에 대한 통합방위 정보공
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생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관 계 법령 발췌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24. 1. 16.>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 ②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 지검장 또는 검사
 5.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
다.
-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
다.
- 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⑥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 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 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 ·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 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관련조문 : 안 제2조제8항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연락처	(033)-330-2019